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Ⅰ 인권경영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 증가**

-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UNGP)』 및 경제협력기구(C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통해 인권경영 구체화

○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18.8.)**

- 정부의 '18.8.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2018~2022)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14.9)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16.2),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16.7)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에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활용 권고 ('18.8)

○ **인권경영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18.11.)**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활동	•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확산 •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평가실시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교육 • 평가 실시 • 결과 보고,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과정 공개	• 구제절차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평가와 개선

II 인권경영 체계 구축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활동	•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확산 •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평가실시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교육 • 평가 실시 • 결과 보고,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과정 공개	• 구제절차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평가와 개선

□ 1-1단계 : 체계 탐색 단계

○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및 제출 (지원-671호 (2018.11.14.))
-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4단계 추진계획 제출

○ **인권경영 체계구축 TFT 구성**

- TFT 운영기간 : 2018. 11. 14. ~ 2019. 7. 31.

- 1차 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 : 2019. 1. 31. (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124호 회의실
- 인권경영지침,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평가에 대한 논의 진행
- 인권경영에 대한 원내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 등

○ 인권관련 규정 및 선언문 초안에 대한 자문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담당자에게 직능연 인권경영규칙 초안 검토요청
- 구두자문 내용을 인권경영규칙 및 인권경영 선언문에 반영하여 추진

<table>
<tr>
<td>
인권경영규칙 제정(안)

제정: 2019. 05.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직능원 임직원 및 직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에 적용한다.
②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원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직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이란 직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직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직능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td>
<td>
사람이 희망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권경영 선언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인권경영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등 국내외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일체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과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의 존중과 보호에 앞장선다.

2019. 7.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직원 일동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d>
</tr>
<tr>
<td>인권경영규칙 제정(안)</td>
<td>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td>
</tr>
</table>

□ 1-2단계 : 체계 구축 단계

○ 인권경영규칙 제정

- 인권경영체계구축 TFT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추가반영하여 인권경영규칙 제정
- 제정일 : 2019. 5. 1.

※ 인권경영규칙 주요 구성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제1장(총칙)	제1조 ~ 제4조	
제2장(인권경영 일반 원칙)	제5조 ~ 제10조	
제3장(인권경영 체계)	제11조 ~ 제15조	
제4장(인권경영 위원회)	제16조 ~ 제23조	
제5장(인권영향 평가)	제24조	
제6장(인권침해 구제)	제25조 ~ 제30조	
부칙		

○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및 인권침해상담원 구성

- 제정 완료된 인권경영규칙을 근거로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및 인권침해상담원 구성
- 제정근거 : 제16조, 제17조 (인권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제12조 3항 (인권침해상담원)
- 목 적 : 인권경영과 관련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각종 정책의 심의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기준

※ 인권경영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5인)
- 내부위원(당연직) : 부원장(위원장), 주관부서의 장, 감사업무 소관부서장,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 외부위원(원장 임명) :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 전문가, 지역주민, 사회적 취약계층 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간사 : 주관부서의 팀장(연구지원팀장)

- 인권침해상담권 구성기준

※ 인권침해 상담원 : 원장이 임명, 주관부서의 담당자 포함하여 2인 이상(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

○ 인권경영선언문 초안 의견 수렴

- 인권경영선언문 초안에 대한 전 직원 대상 의견수렴 실시
-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 의견수렴 후 인권경영 선언문에 결과 반영하여 수정
- 본부장 회의 때 2차 의견수렴 (2019년 5월 본부장회의)

□ 1-3단계 : 활성화 단계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선포식 일자 및 장소 : 2019. 7.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212호 대회의실
-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구 분	세부내용	비고
대외 홍보 실시	-보도자료 배포 및 선포식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 등을 통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 표명 (성과확산팀 협의 및 추진) ※ 직능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선언문' 및 관련 사진 탑재(게재)하여 대내외 홍보	
전 직원 대상 안내	-'인권경영 선언문' 인쇄 후 원내 배포 및 설명자료 공유	
인트라넷 탑재	-원내 그룹웨어에 '인권경영 선언문'을 탑재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협조 제고	
기관 협력사 대상 확산 조치	-'인권경영 선언문(국문/영문)' 배포 ※ 총무팀(인쇄/복사 등록업체 등), 연구지원팀(설문조사업체 등) 등 소관부서별로 관련 협력사에 확산 조치	

– 인권 존중에 대한 각종 국내외 규범의 존중과 준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9대 원칙을 통해 인권경영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

※ 2019.7.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보도자료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보도자료** 2019. 7. 15.	담 당 (연 락 처)	경영지원본부 연구지원팀 이정배 팀장 (044-415-5145, jblee@krivet.re.kr) 경영지원본부 연구지원팀 이양현 행정원 (044-415-3960, lyh@krivet.re.kr)		
	배 포	전략기획본부 성과확산팀 (044-415-5031, gpr@krivet.re.kr)		
	분 량	본문 2쪽	첨 부	사진 1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15일(월) 오전 10시 세종시 청사에서 인권경영 선언문 발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5일(월) 오전 10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책연구단지 청사 대강당에서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 교육 시기 : 매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1회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보직자 대면 교육, 인권침해 상담원 교육 등

□ 인권경영 체계구축 2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활동	•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확산 • 인권경영지침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평가실시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교육 • 평가 실시 • 결과 보고,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과정 공개	• 구제절차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평가와 개선

○ 인권영향평가 실시(인권경영 이행)

- 인권경영 체제를 구성하는 강제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인권 등의 요소를 종합한 종합 체크리스트 마련
- 종합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총 10개 분야, 158개 지표 중, 우리원의 환경 및 업무적 합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지표 수립

○ 인권영향평가(2단계) 실시 목적

-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 일정별 추진계획

구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자체점검	인권경영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자체점검 실시	2/4분기~
보완	점검 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 조치	2/4분기~
지표선정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 지표 선정 논의 및 확정	3/4분기~
평가준비	'인권경영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및 자료 준비	3/4분기~
평가	평가 실시, 결과 접수(주관 부서) ※ '인권경영위원회(평가 주체/ 외부 전문가 참석)'에서 평가 실시	4/4분기
확정공개	기관장 보고 및 평가 결과 외부 공개	4/4분기

○ 평가 원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 평가의 기본 원칙 수립 및 준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후 평가 실시

○ 세부추진계획

절차	원칙 및 내용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주요사업 평가 포함)	- 평가 목적과 원칙, 평가 주체, 평가 기간, 소요 예산, 주요사업 선정 이유 등 관련 계획 수립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 평가의 기본 원칙 수립 및 준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주요사업’ 평가를 위해, 기관 주력사업(대표사업) 중 국민 및 이해관계자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선정 (통상 향후 수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완료 사업에 대해 실시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한 부분 보완 가능) - 선정 사업의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내외부 의견 수렴, 국내외 법률 등 환경 분석 병행 가능) - 분석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할 지표 선정 및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통해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필요) - 최고경영진에 계획 보고 및 승인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선정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실시 - 평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체크리스트 지표 공유
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	-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평가 자료 취합 후 인권경영위원회 제출(대외비 주의)
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 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전년도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동시 평가
5.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 - 평가결과는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한 방지조치 등 포함 필수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진에 보고(이후,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 가능하며, 방지 조치 결과를 다음 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가능) -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결과 공개

□ 인권경영 체계구축 3단계 : 인권경영 실행·공개(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활동	•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확산 • 인권경영지침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평가실시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교육 • 평가 실시 • 결과 보고,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과정 공개	• 구제절차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평가와 개선

○ **인권경영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 인권경영의 추진배경, 개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등 인권경영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탑재하여 인권경영 활성화 도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 연구원 소개 - 경영혁신의 하위메뉴에 관련 내용 탑재(홈페이지 개편과 연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 (www.krivet.re.kr) 개편에 따른 인권경영 자료게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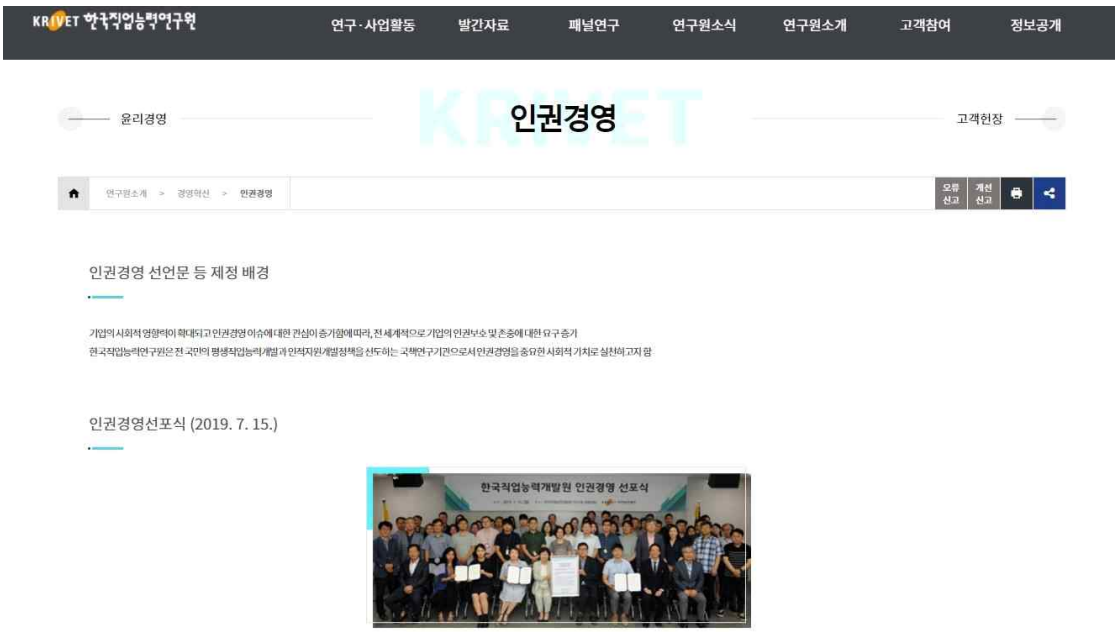

○ 2023년 제1차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일정 : 2023.06.01. ~ 11. 30. (비대면 온라인교육)

– 참석현황

구분	대 상	이 수	불 참	참석률	비 고
전체 임직원(보직자 포함)	219명	149명	32명	68.0%	
보직자(원장, 본부장 등)	29명	17명	12명	58.6%	

– 교육내용 : [행복의 공식] 공정사회 및 인권사회 구현

– 교육 업체(휴넷) 웹사이트(http://krivet.hunet.co.kr)을 통한 교육 수강

○ 2023년 제2차 인권경영 교육 실시

– 대상 : 전체 보직자

– 일정 : 2023. 12. 11(대면 교육)

– 이수현황

구분	대 상	이 수	불 참	참석률	비 고
보직자(원장, 본부장 등)	29명	26명	3명	89.6%	

– 교육내용

1) 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국가인권위원회 교육 자료 활용)

2)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 2023년 제3차 인권경영 교육 실시

– 대상 : 인권침해 상담원 2명

– 일정 : 2023. 12. 11(대면 교육)

– 이수현황 : 100%

□ 인권경영 체계구축 4단계 : 인권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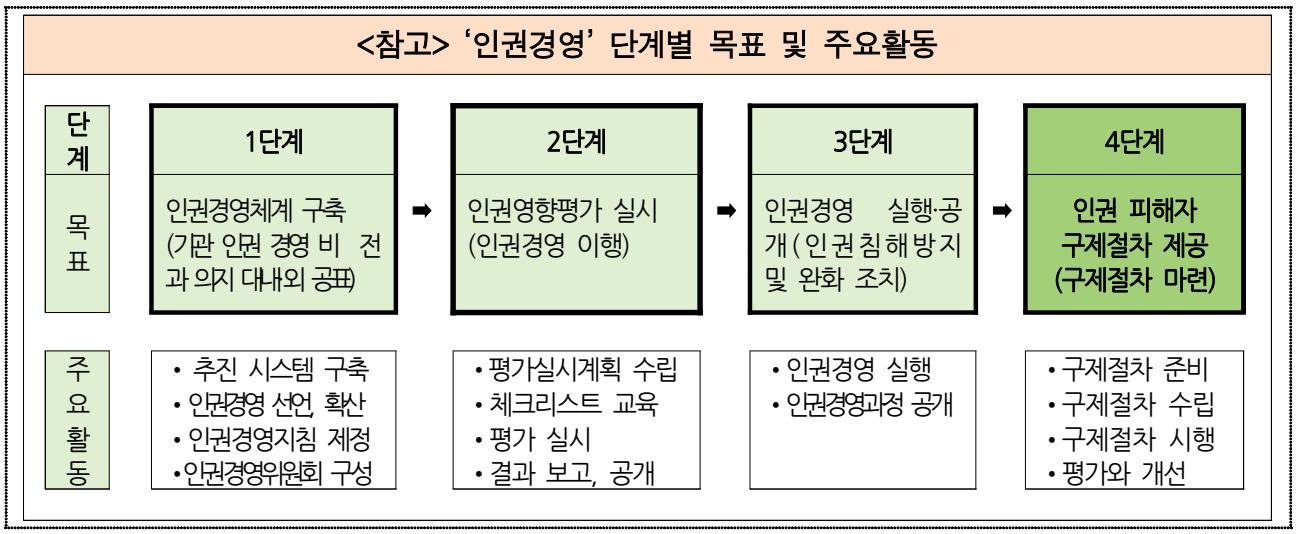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직능연 인권경영규칙 제16조 및 17조 (인권경영위원회의 설 및 및 기능/구성)

– 목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심의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4인)

– 위원장 : 부원장

– 기능

·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인권침해상담원 구성·운영

– 근거 : 직능연 인권경영규칙 제12조 3항 (인권침해상담원)

– 구성 :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

– 주요역할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 인권침해 직원에 대한 상담

· 접수 및 상담 결과에 따른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안내

III 2023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개최 개요

○ 평가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동 이행계획 중 2단계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및 향후 개선사항 도출

○ 일시 및 장소 : 2023. 12. 22. (금) ~ 12. 26. (화)

○ 주요 참여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포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등

○ 안건

- 2023년도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부문별 평가 지표(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요약]

구분	평가 결과	주요 평가 의견	결과 분석
기관운영	- 총 8개 분야 89개 지표(문항) 평가(* 평가위원 11명) - 평가 실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99.7 며 이는 '인권경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 - 7개 지표(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사회적 가치)는 현행 실적으로 평가 기준을 일괄 충족 - 1개 지표(인권경영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	-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며 관련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음 - 기관 전반적인 운영이 인권 관련 분야 및 지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권침해 관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봄 -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보완의견 · 인권경영규칙 제24조에 관련근거조항 신설 - 구제절차 마련 보완의견 · 외부의 구제절차를 이용 가능함을 명문화 필요 · 인권경영규칙 제30(시정과 조치)에 ③추가권고 "③원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그 원인제거를 위한 조치를 한다"	- 인권경영(기관운영/주요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 평가위원 의견(제시의견 및 총평) 등을 참고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 향후 개선(보완) 추진 -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현 기대
주요사업	- 총 3개 분야 10 지표(문항) 평가(* 평가위원 11명) - 평가 실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100%이며, 이는 주요사업(민원 사무 처리 분야)이 일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	- 주요사업의 운영이 관련 분야 및 지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비 고			

[※ 향후 개선 방안 : 인권영향평가 환류체계 운영]

구분	내용	비고
원내 (직능연)	- 평가 결과(의견)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환류체계' 운영 - 기관 운영에 '인권침해 방지(완화) 조치'를 반영하고, 인권경영 추진 과정 공개	평가 의견 분석 ⇒ 개선 방안 마련 및 실행 ⇒ 모니터링 실시

붙임 1 2023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세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인권존중 정책선언] 세부지표 소계	66	66	0	0	0	0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세부지표 소계	44	43	1	0	0	0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인권경영 성과] 세부지표 소계	77	77	0	0	0	0	
[구제절차 마련] 세부지표 소계	66	64	2	0	0	0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소계	**308**	**305**	**3**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고용상 비차별]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고용상 남녀비차별] 세부지표 소계	66	66	0	0	0	0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세부지표 소계	33	33	0	0	0	0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소계	**176**	**176**	**0**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 세부지표 소계	44	44	0	0	0	0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소계	**154**	**154**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강제 노동의 금지] 세부지표 소계	77	77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소계	**77**	**77**	**0**	**0**	**0**	**0**	

5. 아동노동의 금지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연고자고용금지]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5. 아동노동의 금지 소계	**55**	**55**	**0**	**0**	**0**	**0**	

6. 산업안전 보장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작업상 안전]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건강보호·유지] 세부지표 소계	11	11	0	0	0	0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6. 산업안전 보장 소계	**77**	**77**	**0**	**0**	**0**	**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세부지표 소계	44	44	0	0	0	0	
[모니터링 실시]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소계	**66**	**66**	**0**	**0**	**0**	**0**	

8. 사회적 가치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양성 평등] 세부지표 소계	11	11	0	0	0	0	
[직장내 괴롭힘 금지] 세부지표 소계	11	11	0	0	0	0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세부지표 소계	11	11	0	0	0	0	
[외부 고객 인권 보호] 세부지표 소계	33	33	0	0	0	0	
8. 사회적 가치 소계	**66**	**66**	**0**	**0**	**0**	**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민원 사무 처리 분야'							
지표	계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비고
[체계구축] 세부지표 소계	33	33	0	0	0	0	
[민원처리 절차] 세부지표 소계	55	55	0	0	0	0	
[민원처리 관리] 세부지표 소계	22	22	0	0	0	0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총계	**110**	**110**	**0**	**0**	**0**	**0**	